

兒童勞動과 英國의 産業革命

梁 東 然*

<目 次>

- I. 머릿말
- II. 工場制와 兒童勞動의 役割
- III. 兒童勞動의 實態
- IV. 工場立法
- V. 맺음말

겨울의 어느 새벽 비오고 사나운 날에
 동트기 세 시간 전 아버지는 딸을 깨운다.
 그녀의 한술밤 도시락을 안고 어두운 방으로 가서
 흐느낀다, “종이 운다 불쌍한 딸아, 서둘러야지!”

“아빠, 전 깎어요, 지쳐서 일어날 수 없어요,
 길은 멀고 쓸쓸한데, —— 한번만 더 안아 줘요!
 도와 줘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는 일을 잃고
 꼬마동생도 죽었어요, —— 나도 따라 일하다 죽겠지요!”

.....

아! 그녀의 마지막 날 공포의 시간이여
 담과 아픔과 슬픔 속에 천천히 지나가고
 힘이 꺼져 갈수록 실은 더 자주 끊기다가
 물레는 더 빨리 돌고 기통은 더 무거워지네.

해는 진 지 오래인데 밤의 고요는 오지 않고
 무자비한 하늘이 고른 대로 이 날은 시작하고 끝난다.
 겨우 반 페니를 일땀에 주어
 베를 곁에 누워 막시간을 보낸다.

드디어 기계가 멎고 포로들은 집으로 달려간다.
 그녀는 힘이 난 듯 희망에 기운을 차려
 떠나오나 자꾸 쓰러져 다시 못 일어나고
 친구가 안아 아버지 방문에 다다른다.

* 本 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이 글은 拙稿 「영국 산업혁명기의 연소노동」 『외국문학』 6(1985 가을)을 擴大, 改稿한 것이다.

은 밤을 고통 속에 그는 말없이 딸을 지킨다.
 가까이 꿰어 있건만 그녀는 알아보지도 웃지도 않다가
 다시 공장의 종은 울리고 그녀는 다시 깨어나려 애쓴다.
 밀짚 잠자리를 벌떡 일어나 “시간이 되었네!” 비명 지르곤 시들어 죽는다.

.....(1)

I. 머리말

歐美各國의 歷史를 보면 經濟發展 過程에 年少者들이 광범하게 雇傭되었음이 두드러진다. 많은 경우에 있어 어린이는 勞動供給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고 工業化 初期段階에서 흔히 過度한 勞動으로 人間的 榨取를 당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모든 나라에 공통적인 것인지 곳에 따른 政治·經濟·社會·人口的 要因에 기인하는 것인지는 斷言할 수 없으며 이 글에서는 産業革命期の 英國을 고찰함으로써 兒童勞動의 歷史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英國에서는 당시 이들의 役割이 특히 중요하여, 機械化와 함께 未熟練勞動을 多量으로 요구하는 産業의 膨脹에 있어서 年少勞動의 저렴한 공급은 産業勞動力の 거의 절반을 제공하였다. 過多한 勞動時間, 嚴格한 規律 등 지극히 열악한 勞動條件 하에서 이들 미성년자의 상태는 奴隸와도 흡사하였다 하며, 19세기 初葉에 오면 官界·學界 및 社會運動界를 막론하고 各種 證言集·調查報告書·팸플렛 등이 集積되었다. 이렇게 未成年勞動이 사회문제 화됨에 따라 議會는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여 어린이의 工場雇傭을 규제하는 一聯의 立法을 시도하였다. 年少勞動者의 勞動實態와 이들 工場法의 結果에 대한 歷史家들의 연구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 經濟的·社會的 因果關係에 대하여 오늘날에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再解釋에 再解釋을 거듭하고 있다. (3)

(1) Michael Sadler, "The Factory Girl's Last Day" (1832) 中에서 J.T. Ward ed. *The Factory System* (New York, 1970), Vol. II, pp. 44-46에서 再引用.
 (2) 法令의 용어에 따라 13세 미만을 兒童(child), 13세 이상 18세 미만을 年少者(young person)로 구분하는 문헌이 많으나 여기에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年齡을 명기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兒童, 어린이, 未成年者, 年少者 등의 용어를 混用하기로 한다.
 (3) 최근에 출판된 논문들은 이들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斷的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Howard P. Marvel, "Factory Regulation: A Reinterpretation of Early English Experienc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October, 1977); Clark Nardinelli, "Child Labor and Factory Act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December, 1980); W. Landes and L.C. Solmon, "Compulsory Schooling Legislation: An Economic Analysis of Law and Social Change in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March 1972); Neil McKendrick, "Home Demand and Economic Growth: A New View of the Role of Women and Children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Historical Perspectives: Essays in Honor of J.H. Plumb* (Manchester, 1976); Clawdia Goldin and David Parsons, "Economic Well-Being and Child Labor: The

이 글에서는 産業革命期 各國에 광범하게 존재하였던 未成年 工場勞動을 역사적인 안목에서 이해하기 위해 19세기 前半 英國의 경험을 중심으로 주요 爭點을 檢討하고자 한다. 우선 미성년 노동자의 工場雇傭過程과 그 經濟的 意味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들의 勞動條件과 그 人間的·社會的 結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工場法의 制定過程과 그 영향을 이야기함으로써 近代의 産業勞動者 階層의 生成에 있어 年少勞動의 역할을 總體의으로 판단해 보고자 한다.

II. 工場制와 兒童勞動의 役割

18세기 末葉부터 19세기 초반에 걸친 영국의 産業革命이 織物工業, 특히 綿織工業에서 비롯되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綿織物 製造業은 그 재료의 성질상 機械化에 適合하고 製品需要와 要素供給에 있어 가격의 變化에 敏感하여 각 공정에서 저렴한 大量生産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技術革新이 이루어졌다. 제니機, 水力紡績機, 뮤울 등 紡績工程에서의 技術進步는 紡織部門에서의 力織機의 발명을 자극하였고 이들 두 부분의 기계화를 基軸으로 打綿·梳綿 등 準備工程과 漂白·染色·捺染工程의 機械化도 촉진되었다.

그러나 기계나 새로운 技術만으로 産業革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기존 生産樣式에 대한 긴장이 高潮化되자 生産手段과 함께 生産組織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農村의 遊休勞動力을 이용하여 原料 및 道具를 대여하고 一定期間 후 생산된 製品을 회수하던 先貸制 工業으로서의 大量生産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다수의 노동자를 한 곳에 모아 課業別 監督을 시행하고 規律을 강제하는 工場生産制度가 성립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工場制의 본질은 기계화 자체라기보다 규율이요, 노동을 指揮하고 統制하는 組織인 것이다. 先貸制의 가장 큰 약점은 勞動統制의 脆弱性에 있으며, 18세기 말 19세기 초 농촌의 家內手工業者들이 일터를 공장으로 옮기는 데에 極力 저항하였음을 보더라도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대변혁의 革命的 性格은 바로 生産組織의 變化에 있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生産組織의 革命的 變化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산업혁명의 가장 天才的 經營者들에게도 근로자들로 하여금 시간을 嚴守하고 능률적으로 작업

Interaction of Family and Industr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707 (July 1981); Carolyn T. Crane,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Effect on the Market for Child Labor," paper presented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Economic History Workshop (January, 1984).

을 수행케 하는 데에는 수십년에 걸친 懷諭와 強制를 필요로 하였다.⁽⁴⁾ 이는 산업혁명 전까지 인류가 자연과 조화된 불규칙한 생활의 리듬에 오래 익숙해 있었던 데 기인한다. 農業·牧畜·漁撈 등은 계절에 따라 일의 強度가 바뀌는 대표적인 生業이며, 아직 생활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아 노동이 人間의 自己實現形態의 하나였음을 보여 준다. 공업에서도 일의 불규칙한 리듬은 장기간 잔존하였다. 先貸制下的 가내수공업자들이 누렸던 소위 聖 월요일(St. Monday)이 이를 전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대개 製品回收과 다음 주에 필요한 원료의 보급이 토요일 저녁이었으므로 가내수공업자들은 목요일·금요일까지 미친듯이 일하고 週末에는 지나친 음주 및 향락으로 탈진하여 월요일에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고 쉬었다. 기계화된 공장에서는 課業爲主의 노동보다 同一한 시간에서의 相互調整된 규칙적인 노동이 필요하였으므로 이러한 불규칙한 리듬을 革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資本家階層 특히 工場主들의 時間觀念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은 監理敎와 福音主義 등 종교적 계몽·교화와 공장에서의 各種 金錢的·身體的 強制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여 勞動者階層, 은 機械破壞運動·怠業 등으로 저항하였다. 그러나 世代가 교체되면서 노동운동도 규칙적인 노동리듬의 限界 내에서 노동시간을 短縮하려는 운동으로 변모하게 된다. 즉 토요일 午前勤務, 하루 10시간 노동 등이 주창되면서 聖 월요일은 19세기 후반에 오면 자취를 감추었다.⁽⁵⁾ 이와 같이 아마도 충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본능인 인류로부터 정확하고 능률적인 產業勞動者階層을 형성하는 일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노동자들이 工場就業을 “군대나 감옥에 가는 것처럼” 여겼다는 기록도 허다하다.⁽⁶⁾

農村經濟의 變化와 더불어 농촌인구를 都市로, 農業人口를 工業으로 移轉시켰던 유인이 없었다면 이들 공장노동자의 動員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인클로저 운동을 비롯한 農民分解가 產業勞動力 供給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들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移住는 “短距離 求心力의” 移動이었으며, 이들 이주의 原動力은 “농업부문의 否定的 拒否라기보다 공업부문의 肯定的 吸引에” 있었던 것 같다.⁽⁷⁾ 또한 다행히도

(4) David S. Landes, ed. *The Rise of Capitalism*(New York, 1966), p. 14. 또한 Neil McKendrick, “Josiah Wedgwood and ‘Factory Discipline,’” *Historical Journal* (1961)과 Sidney Pollard, “Factory Discipline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1963~1964) 등 참조.

(5) Edward P. Thompson, “Time, Work 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 *Past and Present* (December 1967); Douglas A. Reid, “The Decline of Saint Monday, 1766~1876,” *Past and Present* (May 1976).

(6) Paul Mantoux,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trans. by M. Vernon (1923), revised edition (Chicago, 1983), p. 409.

(7) Arthur Redford, *Labour Migration in England 1800~1850*, 2nd ed. (Manchester, 1964), p. 70. 또한 N.F.R. Crafts, “Enclosure and Labor Supply Revisited,” *Explorations in Economic*

18세기 中葉 이후 영국의 勞動供給은 급속한 人口增加, 스코틀랜드 및 아일랜드로부터의 이민 등에 힘입어 쉽게 充足되었다.⁽⁸⁾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의 勞動供給增加에도 불구하고 近代의 産業勞働者階層의 형성 이전에는 공장제 생산에 적합한 노동력 동원이 극히 制限의 이었고 女性·어린이·流浪者 등 限界의 勞働에 크게 의존함이 불가피하였다.

女性 및 兒童勞働의 動員은 이를 가능케 한 人口의 性別·年齡別 構成과, 教育·家族構成 등 社會的·制度的 要因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산기술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제니기와 수력방적기 시대의 紡績技術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강한 체력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몇몇 工程에 있어서는 어린이의 작은 체구와 섬세한 손놀림이 오히려 기계의 조작에 이로운 면도 있었다. “기계가 근육의 힘을 代替함에 따라 체력이 약하고 신체 발달은 未熟하지만 肢體가 월등히 유연한 근로자를 고용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기계를 사용하는 자본가들은 女性과 未成年者의 노동력을 最優先的으로 구하였다.”⁽⁹⁾ 그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年少勞働의 이점은 더욱 중요한 곳에 있었다. 약한 체력의 근로 어린이들은 柔順하였고, 成年勞働者보다 수동적인 服從의 상대로 통제하기 容易하였으며 임금 부담도 極微하였던 것이다.

初期의 未成年勞働者들은 救貧法에 의해 각 教區가 보호하고 있던 救護對象者(pauper)였다. 産業革命 初期段階에는 기계의 原動力으로 주로 水力을 이용하였으므로 공장은 대개 수력은 豊富하나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散在하게 되어 勞動力 不足이 심각하였다. 한편 인근 教區의 救貧院들은 그들이 宿食시키고 있던 浮浪兒들을 제거하려는 욕구가 상존하였다. 이들 양자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어린이들을 마치 상품 다루듯이 하는 거래가 이루어졌고, 救貧院의 院兒들은 50, 80 또는 100명씩 떼지어 짐승처럼 공장으로 移送되었으며 그들은 공장에서 몇 해씩이고 감금된 생활을 하였다.”⁽¹⁰⁾ 최근 추계에 의하면 初期 공장 노동자의 최소한 3분의 1이 이들 救貧院 徒弟들이었으며 곳에 따라서는 80~90퍼센트에 달하였

History (April 1978); N.F.R. Crafts, “Income Elasticities of Demand and the Release of Labor by Agriculture During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A Further Appraisal,” in J. Mokyr ed. *Economic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Totowa, New Jersey, 1985) 참조. 그러나 인클로저와 수반된 ‘相對的 過剩人口’가 직접 公業부분으로 이주, 공장노동자로 转化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産業豫備軍의 역할을 수행, 이미 공장에 취업된 노동자들의 交渉力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William Lazonick, “Karl Marx and Enclosure in England,”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Summer 1974) 참조.

(8) Sidney Pollard, “Labour in Great Britain,” in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7. part I (Cambridge, 1978).

(9) Karl Marx, *Capital* (1867), trans. from 3rd ed. by S. Moore and E. Aveling (New York, 1967) Vol. I, p. 394.

(10) Mantoux,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p. 411.

다고 한다.⁽¹¹⁾

救貧院들이 이와 같이 대량의 미성년자를 確保하고 있던 까닭은 당시 영국이 貧民救濟의 방법으로 救貧院 徒弟制度(pauper apprenticeship)를 택하고 있었던 데에 있다. 일찌기 헨리 8세 때에 10세에서 18세에 이르는 浮浪兒童들을 검거하여 功業생산의 徒弟로 收監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리고 빈곤을 罪惡視하는 淸教徒 倫理에 입각하여, 각 교구가 구빈원을 운영하며 院兒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왔으나, 그 규모가 점차 커지자 院兒들을 보호한다는 원래의 목적을 放棄한 채 他教區의 공장에 이들을 委託하는 惡習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¹²⁾

19세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救貧院 徒弟의 공장고용이 줄어들었다. 綿織物 工場의 動力으로 蒸氣機關이 이용되기 시작하자 새로운 공장들은 탄광부근에 밀집하게 되었는데 이들 石炭產地는 既存의 도시이거나 급속히 성장하는 마을이었다. 工場의 立地가 이와 같이 비교적 인구가 조밀한 지역이었으므로 勞動力의 供給을 다른 지방에 의존할 필요가 적었다. 즉 “맨체스터 같은 도시에서는 勞動力 不足이 거의 없었으며 글라스고우 近郊의 한 기업가는 도시노동자를 교외로 動員하여 繁盛하였다”고 한다. 또한 농촌의 水力工場의 경우에도 기계의 크기와 중량이 늘어남에 따라 年少勞動보다 成年勞動者의 比率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¹³⁾

宿食提供의 댓가로 수년간 근로어린이를 공장에 繫縛시키는 救貧院 徒弟制度가 사라지고 이에 대신하여 계약체결에 의한 自由未成年 勞動雇傭이 일반화되고 관습화된 것이다. 工場主와 아동노동자의 부모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주로 週給制에 의한 1년 또는 수개월간에 걸치는 고용을 내용으로 하였다. 즉 繅絲紡績機의 등장과 함께 성년남자의 노동력이 점차 필요하게 되자 공장주들은 賃勞動의 고용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공장의 家族關係가 이러한 전환을 용이하게 하였다. 부모나 어린이를 함께 고용함으로써 노동자의 金錢的 欲求를 충족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부모에게 교육 및 감독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공장노동의 불쾌한 측면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¹⁴⁾

(11) John Rule, *The Experience of Labour in Eighteenth Century English Industry* (New York, 1981), p. 29; Francis Collier, *The Family Economy of the Working Classes in the Cotton Industry 1784~1833*, ed. by R.S. Fitton (Manchester, 1964).

(12) Ivy Pinchbeck and Margaret Hewitt, *Children in English Society* (London, 1973), Vol. I, p. 241; Derek Frazer, *The Evolution of the British Welfare State*, 2nd ed. (London 1984), ch. 3.

(13) Sidney Pollard, *The Genesis of Modern Management* (Cambridge, 1965), p. 173. Redford, *Labour Migration*, p. 29.

(14) David S. Landes, *The Unbound Prometheus: Technological Chang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from 1750 to the Present* (Cambridge, 1969), p. 117.

10대 후반의 자녀들은 거의 成年勞動者의 일을 수행하였으며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부를 도와 副次的인 과업을 맡았다. 떨어진 숨덩이를 줍는 다든가 끊어진 실을 잇는 다든가 잔심부름을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당시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나쓰 시니어는 다음과 같이 관찰한 바 있다.

18세의 여공은 역직기의 조작에 있어 성년 남자와 다름이 없으며 13세의 소년은 綿絲를 잇는 데에 성년 보다 우월하다. 이들은 손놀림이 섬세하고 시선이 날카롭기 때문이다. 18세의 남녀 工具이 결혼할 경우 가족의 소득이 倍增하여 순식간에 부유해지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곤란을 느끼게 될지라도 그들의 자녀가 9세에 도달하기만 하면 生計維持에 문제가 없다. 타지역으로부터의 이민도 있었지만 이러한 어린이들의 노동수익성이 자극되어 製造業 中心地의 인구가 아마 미국의 몇몇 지방을 제외하고는 비길 수가 없는 속도로 증가했던 것이다. (15)

1830년대에 오면 기술이 더욱 進歩되어 新型 繅絲機와 自動紡績機가 도입되고 兒童勞動에 대한 立法的 規制가 실시되어 공장노동자 중 年少者의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때에는 공장의 규율과 정확성에 단련이 된 새로운 세대가 이미 성년층에 도달했던 것이다. (16)

말할 것도 없이 年少勞動의 경우에도 규율은 자동적으로 얻어지지 않았다. 고용자들은 수시로 體刑, 罰金 또는 解雇의 威脅 등 심한 방도를 택해야 하였다. 초기의 自由 年少勞動의 경우는 부모나 보호자가 극소수를 직접 통제하는 형태였으므로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량고용이 시작되자 어린이들은 기술을 습득한다는 誘因이 없어지고 공장노동의 단조로움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러한 모든 것이 가족,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약화되는 시기에 일어났던 것이다. 이리하여 때에 따라서는 어린이들은 공장주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成果給을 받는 未熟練勞動者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고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 2차적 고용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린이들을 혹사하였다. 더우기 織物工業 중에서도 연소자들은 生絲를 꼬는 일이나 綿絲를 잦는 일 등 일정한 工程에 집중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규율을 유지하기가 가장 힘이 들었다. (17) 그렇지만 성년노동자들보다 연소자들이 엄격한 규율하에 감독하기에 용이하였기 때문에 직물공장에 年少勞動이 광범위하게

(15) Nassau Senior, *Grounds and Objectives of Budget*, p. 506, G.C. Jones and G.E. Mingay eds. *Land, Labour and Population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1967), p. 119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 人口史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出生率의 증가는 1815년 경에 정점에 달하고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산업혁명기 인구증가의 주요인이 출산을 증가였다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E.A. Wrigley and R.S. Schofield, *The Population History of England, 1541~1871: A Reconstruction* (Cambridge, 1981) 및 拙稿, 「人口史에 있어 經濟學의 應用: 人口・經濟關係에 관한 理論 및 實證文獻의 批判的 檢討」, 『經濟論集』(1986, 12) 참조.

(16) Landes, *Unbound Prometheus*, p. 117.

(17) Pollard, *Genesis of Modern Management*, pp. 185-186.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綿織工業에 있어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비중은 오랜 기간 동안 40~45퍼센트를 차지하였다. 몇몇 대규모 공장들에서는 이 비율은 훨씬 높아서 1816년 호록스 밀러 회사의 경우 노동자의 13퍼센트가 10세 미만이었으며 73퍼센트가 18세 미만이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의 비중은 이것보다는 낮은 것이 보통이었으나 救貧院 徒弟를 아직 이용하던 대규모 水力工場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예를 들면 뉴 레나아크의 데이비드 테일 공장은 1793년에 18퍼센트의 노동력을 9세 이하의 어린이들에 의존하고 있었다. 亞麻 및 毛織物工業에서의 年少勞動의 비중은 綿織工業에서보다 높아 18세 이하가 절반이 넘었으며 여기서도 개별 공장에 따라 그 비율이 더 높은 곳도 많았다. 존 마샬의 워터레인 공장에서는 1831년에도 15세 미만의 노동자가 49.2퍼센트, 20세 이하가 83.8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었다. 絹織工場은 거의 모든 노동력을 연소자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더우기 6세 내지 7세 밖에 안되는 어린이들도 다수 고용되었다. 일반적으로 3분의 2 내지 4분의 3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그에 따라서는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투우털 공장의 경우 노동자의 78퍼센트가 16세 미만이었다. (18)

<표 1>에서 <표 3>까지는 綿紡織工業에서의 年少勞動의 構成比와 그 趨勢를, <표 4>는 여타산업에서의 兒童勞動 雇傭狀況을 간략히 보여 준다. 요약하여 말한다면 근로어린이들은

<表 1> 英國綿織工場의 雇傭構造(1833)

工 程 別	성 인		18세 미만의 연소자						연 령 및 성 별	총고용 자 수
	남	녀	남			녀				
			공장주 직 고 용	직공에 의 한 고 용	고용 상 태 미 상	공장주 직 고 용	직공에 의 한 고 용	고용 상 태 미 상		
洗 綿	1,330	2,319	951	3	31	345	6	13	—	4,998
梳 綿	10,361	15,062	4,983	461	78	8,099	458	163	819	40,484
뮤 울 紡績	22,727	5,196	3,038	23,634	257	1,255	8,663	82	364	65,216
트로살 紡績	793	3,000	1,409	25	100	2,203	19	160	—	7,709
얼 레 감 기	722	11,208	182	25	—	2,306	76	119	—	14,638
織 布	20,440	28,566	4,581	2,582	204	12,109	4,261	119	2,193	75,055
고 께 락 기	261	389	19	3	—	31	22	—	—	725
機 械 工	3,759	34	151	9	19	3	—	—	—	3,975
	60,393	65,774	15,314	26,742	689	26,351	13,505	656	3,376	212,800

자료 : *Parliamentary Papers, Factory Inquiry Commission, Supplementary Report, 1834 (167) vol. XIX part 1, p. 138.*

(18) 같은 곳,

<表 2> 면직공장노동자의 연령 및 성별구조(1835~1850)(%)

	1835	1838	1847	1850
13세 미만 남녀 및 시간제고용	13.2	4.75	5.8	4.6
남, 13~18세	12.5	16.6	11.8	11.2
남, 18세 이상	26.4	24.9	27.1	28.7
여, 13세 이상	47.9	53.8	55.5	55.8
총 고용자 수	218,000	259,500	316,400	331,000

자료 : *Victoria County History, Lancashire*, vol. II, p. 390; N.J. Smelser, *Social Change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Chicago, 1959) p. 202에서 전재.

<表 3> 랭카셔 및 체셔지방 면직공의 평균임금(1833)

공 정 별	연령 및 성별	고용자수	평균월간 노동시간	주 (69시간) 당 임 금
梳 綿				s. d.
소 먼	남자 성인	376	275.2	23 6
잭틀 담당	주로 여자성인	696	273.5	8 0
실패틀 담당	주로 여자성인	945	276.8	7 5½
실뽑기	주로 여자성인	1,931	275.6	7 5¼
뮈울방직				
감 독	남자 성인	145	275.9	29 3
실잣기	남녀성인 그러나 주로 남자성인	3,797	275.5	25 8
실잇기	남녀성인 및 미성년 그러나 주로 미성년	7,157	274.8	5 4¼
떨어진 솜줍기	남녀 미성년	1,247	272.6	2 10¼
트로살방직				
감 독	남자 성인	82	272.8	22 8½
살잣기	여자 성인 및 미성년	1,123	272.2	7 9
織 布				
감 독	남자 성인	400	273.9	26 3½
날실걸기	남녀 성인	332	273.0	12 3
베짜기	남녀성인 및 미성년 그러나 주로 여자	10,171	273.7	10 9¼
다듬기	남자 성인	836	276.0	27 9¼

자료 : *Parliamentary Papers, Factory Inquiry Commission, Supplementary Report 1834* (167) XIX p. 124; F. Collier, *The Family Economy of the Working Classes in the Cotton Industry 1784~1833* (Manchester, 1964) p. 69에서 전재.

새로운 生産樣式이 뿌리를 내리는 결정적인 시점에서 공장노동력의 短期的 供給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長期的으로는 時間規律과 勞動倫리가 고취된 저임의 유순한 어린이들은 새로운 世代로서 근대적 산업노동자 형성에 큰 공헌을 하였다.

다른 한편, 이들 연소노동의 존재는 대개의 경우 극히 취약하고 불안정한 노동조직이 기대되는 산업, 즉 織物工業에 강력한 勞動組合 運動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表 4〉 영국 각 산업에서의 아동고용상황(1833~1834)

산 업	최소고용연령 (세)	연 소 자 의 연 령 분 포 (세)	하 루 당 평 균 노 동 시 간 (시간)	총 노동자수에 대 한 16세 미만 동 의 비 율 (%)
면 직	8	8~18	13	35
레이스	4	4~14	12~13	40
모 직	6	6~18	12~13	40
견 직	6	6~18	12~14	46
아 마	6	7~14	12~13	40
탄 광	4	4~12	8~18	22
금속광산	지하	7~12	8	
	노면	5~12	10~12	
굴뚝소제	4	4~8	12	

자료 : C. T. Crane,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Effect on the Market for Child Labor,"에서 작성.

하였다. 즉 랭카셔 지방의 綿織物工業의 노동조합은 숙련된 소수의 남성 繡織工들이 주도하였던 바 이들은 더욱 고도의 기계화 단계에서도 강력한 團體交涉權을 잃지 않았으며 궁극적으로 그들 주변의 다수의 미숙련노동자들을 組織化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는 미숙련공들이 주로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¹⁹⁾

III. 兒童勞動의 實態

이제까지 近代的 工場制度의 생성에 있어 年少勞動이 수행했던 중대한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막대한 댓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었다. 실로 兒童勞動은 歷史的 恐怖의 現場이었다.

救貧院 徒弟의 奴隸的 慘狀은 앞 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직물공장에서 일하는 다수의 自由 年少勞動者들의 상태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었다. “이전에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명목적으로나마 자유의사에 의해 판매하였다. 이제와서는 그는 아내와 자식을 팔게 되었다. 그는 奴隸商人이 된 것이다.”⁽²⁰⁾ 에드워드 톰슨은 그의 大作『英國 勞動階級の 形成』에서 어떤 목사가 매장한 공장소년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 그는 팔 한 아름 羊毛을 안은 채 서서 자고 있다가 채찍질에 깨어났는데 이날 17시간을 일했으며, 아버지가 안고 집에 갔으나 저녁을 먹지 못하였고, 다음날 새벽 4시에 깨어 공장의 불빛이 보이

(19) Eric. J. Hobsbawm, *Industry and Empire* (New York, 1969), p. 65.

(20) Marx, *Capital*, Vol. I, p. 396.

는가 늦을까 겁이 난다고 물은 후 숨졌다고 한다.⁽²¹⁾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공장근로 어린이들에 관한 記錄은 새들러(Michael Sadler)의 「特別委員會報告書」(1832)로서, 공장연소자들의 慘狀과 질병, 재해 등 음울한 장면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 기록의 증언들이 때때로 시대적으로 以前의 기간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되기는 하지만 이 보고서는 當代나 그 이후를 막론하고 전혀 그 說得力을 잃지 않고 있다. 87명의 證言의 集積인 682페이지에 달하는 이 報告書는 출판 직전에 의회가 해산되는 바람에 聽聞會에서 읽혀지지는 않았다. 더우기 새들러가 1832년 12월 리이즈 선거에서 패배하여 同 委員會의 활동은 재개되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보고서에서 몇 문단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5047. 盛業期에는 그 소녀들이 아침 몇 시에 공장에 출근하였습니까? 성업기에는 약 6주 동안 새벽 3시에 출근하여 밤 10시 또는 거의 10시 반까지 일하였습니다.

5054. 이러한 과중한 노동 때문에 아침에 자녀들을 깨우는 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른 시간에는 잠이 든 채 일으켜 세우거나 마루 위에 눕힌 채 옷을 입혀 보냈습니다.……

5059. 그들은 몇 시간이나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저녁을 먹인 후 잠자리에 보내는 것이 거의 11시경이며 내 아내는 그들을 제 시간에 깨울 수 없을까 두려워 밤을 새우는 수가 많았습니다.……

5075. 당신 아이들 중 체적질을 당한 이가 있습니까? 네, 모두입니다. 큰 딸의 경우 두 주일 전 내가 랭카셔에 갔다 돌아와 어깨의 매자국을 보고 “앤, 무슨 일이나”고 묻자 “감독님이 체적으로 때렸어요, 그러나 제발 감독님에게 가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일자리를 잃게 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왜 맞았는지 이야기하면 감독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할게요, 아버지. 나는 떨어진 솜덩이를 치우고 있었는데 내 옆 여공이 워낙 숙련되어 있어 내가 치우는 동안 기계의 옆 쪽을 쳐들어 줄 수 있었어요. 그때 감독이 다가와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옆사람이 기계의 위뚜경을 열고 있는 동안 내가 치우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감독은 당장 기계를 제자리로 돌리라고 했고 그녀가 말을 듣지 않자 우리의 어깨를 체적으로 때렸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그때 같이 있었는데 앤은 등이 호물호물해지도록 맞았다고 합니다.……⁽²²⁾

새들러 報告書의 증언은 엄청난 反響을 불러일으켰고 영국 산업혁명 초기의 年少勞動에 대한 기본적인 告發文書로 남아 있다. 새들러와 또 “공장어린이의 帝王”이라고 불리는 공장법 特別委員 오슬러(Richard Oastler) 등의 아동노동에 대한 비난은 그후 해몬드 夫妻, 헛친스, 해리슨 등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 되풀이되었다.⁽²³⁾

(21) E.P. Thompso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New York, 1963), p. 347.

(22) *Parliamentary Papers*, Report from the Select Committee on the “Bill to Regulate the Labour of Children in the Mills and Factories of the United Kingdom.” with Minutes of Evidence, Appendix, and Index (1831~1832), pp. 192-193.

(23) K.E. Carpenter ed. *Richard Oastler: King of Factory Children Six Pamphlets 1835~1861* (New York, 1972); J.L. Hammond and Barbara Hammond, *The Town Labourer, 1760~1832* (London, 1932); B.L. Hutchins and A. Harrison, *A History of Factory Legislation* (Westminster, 1903).

이러한 傳統的인 관점에 대항하여 유어, 그렉, 헛트, 또 최근에는 나디넬리 등을 포함하는 樂觀主義者들의 反駁이 대두되었다. 그들은 새들러 報告書를 “이제까지 어느 公文書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방적인 진술과 虛僞中傷의 集大成”, “주로 개별적이고 의도적으로 選擇된 事例들로 구성된 것”, 또 “偏見이 명백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²⁴⁾ 새들러 報告書의 偏向性은 앙겔스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다. “이 보고서는 工場制를 극력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두드러지게 黨派的인 것이었다. 새들러는 그의 고귀한 熱望 때문에 가장 歪曲되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질문의 방식 자체에 의해 증인들로 하여금 眞實을, 그러나 전혀 그릇된 인상을 주는 형태로 말하게 하였다.”⁽²⁵⁾ 「工場委員會報告書」(1833~1834)가 종종 새들러委員會 報告書의 부당성을 밝혀 주는 자료로 提示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앤드류 유어는 거의 모든 대규모 綿織工場의 경우 어린이에 대한 잔혹한 억압은 그 예가 극히 드물었고 이러한 예도 工場主의 책임이라기보다는 成年工員들의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매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紡績工입니다. 공장주는 아니었던가요? 아닙니다, 공장주는 어린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공장주가 직접 고용하지도 않았읍니다.…… 당신(紡績工)이 편사를 잇는 어린이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합니까? 네, 맨체스터에서는 대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공장주께서는 매우 엄격하시므로 너무 어린 아이는 쓰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가끔 매를 맞습니까? 때때로 맞지만 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건을 망치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주의할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주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體刑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²⁶⁾

그러나 同 報告書의 다른 많은 부분은 이와 다른 결론을 의미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같은 보고서에서 공장노동자의 연령이 대개 8세부터 시작되나 곳에 따라서는 5세의 어린이도 있었고, 노동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4시간 16시간에 달하였으며, 工場主들이 年少者의 體刑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매질을 하기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스코틀랜드의 한 공장주는 도망한 16세의 직공을 말을 타고 쫓아가서는 공장까지 쉴 새없이 채찍질을 하며 끌고 왔다고 한다.⁽²⁷⁾ 이와 같이 증인들이 서로 다를 때 공원들의 말보

(24) R.H. Greg, *The Factory Question* (London, 1837); W.H. Hutt, “The Factory System of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in F.A. Hayek ed. *Capitalism and the Historians* (Chicago, 1954), pp. 158-159; Nardinelli, “Child Labor and Factory Acts,” p. 740.

(25) Friedrich Engels,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1845), trans. and ed. by W.O. Henderson and W.H. Chaloner (Stanford, 1958), p. 192.

(26) *Parliamentary Papers*, Factory Inquiry Commission, *Supplementary Report* (1834), Vol. XIX. part I, p. 193, Andrew Ure, *The Philosophy of Manufacturers* (London, 1835), p. 358에서 재인용.

(27) *Parliamentary Papers*, Factory Inquiry, Commission, *First Report* (1833) A.I. p. 35, Engels,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p.170에서 재인용.

다 雇傭者들의 이야기를 선호해야 할 이유가 하등 없을 것이다. 새들러委員會의 報告書가 고용자측으로부터 공박을 받는 것 이상으로 工場調査委員會 報告書는 노동자측의 비판의 대상이었다. (28)

그렇다면 樂觀論者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다는 설이다. 산업혁명 이전에도 어린이들의 상태는 똑같이 劣惡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1830년대의 아우성이 있기 이전에 이미 상황이 호전되고 있었으며 당시의 大衆的인 煽動은 黨派의 利害關係의 產物이라는 설이다. 극단적인 형태의 한 敗北主義의 論旨는 연소노동이 합리적인 選擇의 結果이며 이에 대한 개입은 어린이의 福祉를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가정교육이 不在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은 未開人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으며 가벼운 노동에 종사함으로써 어느 정도 나은 처지에 놓일 터인데 어린이들이 담당할 일은 일반적으로 가벼웠다. 흔히 강조되지 않는 두드러진 사실은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社會改革論者들이 비난하는 工場勞動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29)

물론 아동노동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工場制 時代 以前에도 어린이는 본질적으로 手工業經濟의 일부분이었다. 16세기에 이미 베니스의 한 귀족의 旅行記에 대부분의 영국 부모들이 아이들이 7살, 늦어도 9살이 되면 일을 시키기 시작한다고 하였으며, 18세기 초 다니엘 데포우는 노포크의 어린이는 4살이나 5살에 자기 먹을 일을 하며, 요오크셔에서는 “4살이 되어 손만 놀릴 줄 알면 자기 부양에 충분하다”고 기록하였다. (30) 공장이 발달하기 오래 전의 家內工業에서도 年少勞動은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는데 繭糸紡績機의 발명자인 새뮤얼 크롬프턴의 큰 아들 조오지는 그가 네살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내가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繭糸 뽑는 일을 돕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머니는 鐵絲 체에 솜덩이를 놓고 방망이질을 한 뒤 비누거품이 가득 담긴 깊은 갈색 항아리에 담갔다. 그리고는 내 페티코우트를 허리까지 걸어올리고 항아리 속에 나를 집어넣어 바닥의 솜을 밟게 하는 것이다. 또 한 체 가득 솜덩이를 방망이질한 후 나를 항아리에서 꺼내고 솜을 넣고는 다시 나를 집어넣어 밟게 하였다. 항아리가 솜으로 가득 차서 내가 안전하게 그 위에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이 과정은 반복되어 결국 나는 옆에 있던 의자에 엉덩방아를 찧게 되는 것이었다. (31)

이와 같이 연소노동의 가장 광범한 형태는 家內經濟 또는 家族經濟 內部에서 이루어진

(28) Thompso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pp. 337-338.

(29) Philip Gaskell, *The Manufacturing Population of England* (London, 1833). Hutt, “Factory System of the Early 19th Century,” p. 177 에서 재인용. Hutt, 같은 글, p. 178.

(30) E.H. Hunt, *British Labour History 1815~1914* (Atlantic Highlands, NJ, 1981), p. 9. 또한 Daniel Defoe, *A Tour Through the Whole Island of Great Britain* (1724~1726) abridged edition by Pat Rogers (New York, 1971) 참조.

(31) Gilbert J. French, *The Life and Times of Samuel Crompton* 3rd. ed. (Manchester, 1862), p. 58. Ward, *Factory System* Vol. II, p. 67에서 재인용.

것이었다. 뒤뚱거리며 걸음질할 정도의 아이는 자질구레한 물건을 집어오거나 날랐고, 조금 더 큰 아이는 솜덩이를 널거나 물레를 돌리거나 실패를 감았으며 더 장성하면 실을 잣게 되었다. 직물공업의 경우 연소노동이 지극히 깊게 뿌리박고 있어서, 어린이들이 일의 도와 家計所得을 증가시킬 수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종종 이를 부러워하였다. 또한 모든 가정에서 어린 딸들은 빵을 굽거나 술을 빚거나 청소나 밥 짓는 일에 동원되었으며, 농업부문에서는 어린이들이 주로 헐벗은 채 날씨에 관계없이 들이나 농장에서 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공장노동과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전의 일에는 어느 정도 다양성이 있었으며 공장에서의 단조로움이야말로 아이들에게 특별히 잔인한 것이었다.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는 어린이들의 일은 간헐적이거나 여러 과업을 순환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실패를 감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온종일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항아리의 솜뚫기도 매일 8시간씩 지속되지는 않았다. 간단히 말하면 어린이의 나이와 능력에 따라 점차적으로 일이 달라졌고 또한 일의 중간중간에 심부름을 하거나 후밭기를 따거나 나뭇가지를 줍거나 또는 뛰노는 시간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은 家族經濟 내에서 부모의 보호 하에 이루어졌다.⁽³²⁾ 이에 반하여 공장제 하에서 추구되는 노동조직은 가내노동보다 "특별히 불유쾌한 生活樣式을 강제"하였다.⁽³³⁾ 공장제는 家內手工業의 가장 나쁜 점들만을 전승하고 좋은 점들은 전혀 보존하지 않았던 것이다.

연소노동이 가족경제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은 당시 영국사회의 부모들이 자녀를 오늘날처럼 소비재로 생각하지 않고 5~6세 이후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投資材로 간주하였던 데 기인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특히 18세기의 급격한 人口增加에 의해 연령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의 '稀少價値'가 하락한 것을, 또 한편으로는 당시 淸教徒倫理의 영향으로 아동들을 '작은 成人'으로 대우했던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다. 아동들은 7세가 되면 그들의 행위에 관습법 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고 衣食住 및 言行的 습관들도 그들이 스스로를 扶養하도록 근면히 일해야 하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인이었음을 반영하고 있다.⁽³⁴⁾

아동들로부터 責任感과 獨立心을 기대하였던 반면 부모로부터는 子女教育이나 扶養, 또

(32) Thompso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pp. 333-334.

(33) Gaskell, *Manufacturing Population of England*, ch. 4, Richard L. Tames ed., *Document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1750~1850* (London, 1971), p. 93에서 재인용.

(34) Pinchbeck and Hewitt, *Children in English Society*, pp. 348, 351, 388.

는 가혹행위의 절제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慣習이었다. 따라서 공장에 고용된 아동들을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할 制度的·思想的 裝置가 없었던 것이다. “아동노동의 착취에 대한 낙관론의 대부분은, 인간사회에는 각자의 본분이 있게 마련이며 각자가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宗教的 裁可에 뒷받침된 관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³⁵⁾

또한 賃勞動의 확대와 함께 家族經濟가 ‘家族賃金經濟’(family wage economy)로 변모함에 따라 성인남자와 여성, 자녀들의 일터가 각각 분리되었고 이것이 가족의 유대를 소원케 하여 家父長의 권위도 하락 또는 변형시켰다. 이는 양면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공장취업 자녀들이 가부장적 통제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을 성취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반면 低賃金과 불안한 고용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취약하게 만들기도 한다.⁽³⁶⁾

공장제의 도입에 따른 근로어린이들의 福祉下落과 관련하여 몇 가지 人口學的 史料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勞働者 衛生條件 調査委員會」(1842) 위원장이었던 채드윅의 추계에 따르면 18세기 말 이후 계속 乳兒死亡率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지역 노동자의 경우 위생조건이 극악했던 이유로 平均壽命이 20세를 못 미쳤다(〈표 5〉 참조). 티프스, 폐결핵, 콜레라, 천연두 등의 만연으로 1840년경 맨체스터와 리버풀의 노동자계층의 자녀들은 60 퍼센트 정도가 5세 이전에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³⁷⁾ 최근 人口史의 發達로 영국의 산업혁명 기간 동안 평균수명이 약 35세에서 약 40세로 늘어났고 출산율도 급히 상승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地域別·階層別 推計에서는 채드윅의 자료를 대신할 것이 아직 나오지 않고

〈表 5〉 평균사망연령(1842)

	켄 트 리	상 인	노 동 자
맨 체 스 터	38	20	17
베 트 날 그 린	45	26	16
리 버 풀	35	22	15
리 이 즈	44	27	19
더 어 비	49	38	21
트 루 로	40	33	28
리 트 란 드 서	52	41	38

자료: 주 37 참조.

(35) 같은 책, p. 357.

(36) 공업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모는 女性史 문헌에 널리 고찰되고 있으며 아동노동을 이러한 시각에서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Louise A. Tilly and Joan W. Scott, *Women, Work and Family* (New York, 1978); Michael Anderson, *Approaches to the History of the Western Family, 1500~1914* (London, 1980); David Levine, “Industrialization and the Proletarian Family in England,” *Past and Present* (May 1985) 등 참조.

(37) Edwin Chadwick, *Report on the Sanitary Condition of Labouring Population of Great Britain* (1843), ed. by Michael W. Flinn (Edinburgh, 1965), ch. 4.

이다. 산업혁명기의 生活水準 論爭의 결과를 보아도 工場이 집중된 지역에서의 勞動者들의 실태는 實質賃金水準・消費水準・健康狀態 등 어느 척도로 보더라도 19세기 초반까지 계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³⁸⁾

연소 공장근로자들의 厚生水準을 나타내 주는 획기적인 史料가 최근에 주목을 끌고 있다. 人體成長學(auxology)의 진보에 따라 영양상태와 연령별 身長의 관계가 더욱 공고히 밝혀지자 공장근로자의 福祉의 지표로서 역사적 신장기록이 분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성년이 되기까지의 신체발달은 노동의 강도에 따른 소모분을 제외한 純營養에 따라 결정되는데, 발육기의 순영양의 부족은 일차적으로는 키가 크는 시기를 지연시키며 심하면 성년이 되어도 단신으로 머물게 한다. 따라서 연령별 신장의 절대적 및 상대적 관찰을 통하여 생활수준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⁹⁾

원래 7년전쟁 기간 동안 海軍力 動員을 위하여 창립되어, 이후 런던 거리의 貧寒한 소년들에게 宿食 및 訓練을 제공하여 왔던 머린 소사이어티(London Marine Society)는 영국 산업혁명기 연소노동자들의 年齡別 身長을 기록한 중요한 사료를 남기고 있다. <그림 1>은 이 기록을 이용하여 당시 13세부터 16세 사이 런던 소년들의 평균 신장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⁴⁰⁾ 19세기 초까지 14세 및 15세 어린이들의 身長減少는 이 기간 중 年少勞動者들의 純營養狀態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절대적으로 보면 18세기 말까지 출생한 런던 소년들의 연령별 평균신장(13세 130.6센티, 14세 135.5센티, 15세 142.0센티, 16세 146.6센티)은 지극히 작아서 고금을 막론하고 뉴기니아의 루미族을 제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이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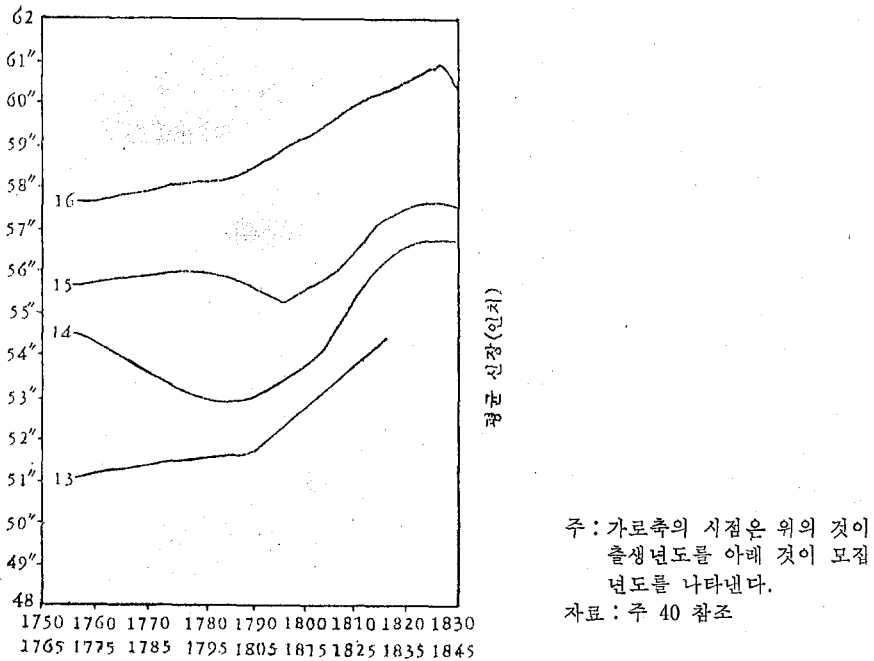
이제까지 연소노동이 새로운 것이 없다는 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1830년대의 大衆的 煽動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상황이 호전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의 最新版은 “기술진보에 의해 양질의 기계가 도입되어 솜덩이의 폐기가 줄어들고 실이 덜 자주 끊어지게 되었다. 공장의 조직이 향상되어 副次的 勞動者 需

(38) M.W. Flinn, *The European Demographic System 1500~1820* (Baltimore, 1981), ch. 6; E.A. Wrigley and R.S. Schofield, *The Population History of England*, ch. 7; Arthur J. Taylor ed. *The Standard of Living in Britain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1975); L.D. Schwarz, “The Standard of Living in the Long Run: London, 1700~1850,”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February, 1985).

(39) 人體成長學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J.M. Tanner, *Fetus into Man: Physical Growth from Conception to Maturity* (Cambridge, 1978)가 있다. 더욱 전문적인 것으로는 같은 저자의 책 *A History of the Study of Human Growth* (Cambridge, 1981) 및 拙稿, 앞의 글을 참조.

(40) Roderick Floud and K.W. Wachter, “Poverty and Physical Stature: Evidence on the Standard of Living of London Boys 1770~1870,” *Social Science History* (Fall 1982), p. 435.

(41) 같은 글, pp. 444-445. 참고로 韓國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14세)의 平均身長은 1960년에 149.6cm, 1985년에 160.2cm이다. 文敎部, 「初中高中生 體格現況」(1986).



〈그림 1〉 머린 소사이어티 소년의 연령별 평균신장 추이

要件이 감소하였으며, 연소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하락하였다”는 것이다.⁽⁴²⁾ 즉 나디넬리는 공장의 동력이 수력에서 蒸氣機關으로 바뀌고 自動무울紡績機를 사용케 되어 연소노동의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家計所得의 증가에 따라 연소노동의 공급 또한 감소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1842년 「工場檢閱官報告書」에 “自動紡績機의 도입과 기계의 連動 또는 復動式 연결에 의해 紡績室에서 청년노동자의 고용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⁴³⁾ 스멜서는 방추의 수를 늘인 新型 무울은 일반적으로 紡績工當 助手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1819년 맨체스터의 한 방적공은 504개의 紡錐를 엮은 두 대의 무울紡績機를 가동시키는 데에 그의 처와 동생 등 두명의 조수가 필요하다고 증언하였다. 1832년 다른 紡績工은 양질의 綿絲를 갖는데 세 명의 어린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음 해에는 표준적인 공장에서 紡績工 1인당 4명의 조수의 비율이 標本이었으며 역시 1833년에 한 工場調査委員에 의하면 신형 무울은 助手 對 成年紡績工의 비율을 4대 1에서 9대 1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였다.⁽⁴⁴⁾

(42) Nardinelli, “Child Labor and Factory Acts,” p. 745.

(43) *Parliamentary Papers, Factory Inspector's Report (1842)*, XXII, p. 453.

(44) Neil J. Smelser, *Social Change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An Application of Theory to the British Cotton Industry* (Chicago, 1959), pp. 197-198.

나디넬리는 1833년과 1835년의 工場設問調査를 비교하여 綿織物工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의 고용비율이 15.9퍼센트에서 13.1퍼센트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같은 사료를 면밀히 검토한 다른 史學者에 의하면 “1833년 工場調査委員會의 設問調査에 답한 공장수는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여 이 결과를 믿기가 어려우며...여타의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⁴⁵⁾ 또한 同 調査委員會 1차보고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공장에 고용된 어린이들은 뚜렷한 계층으로서 幼兒人口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이 고용된 年少者의 수가 製造業雇傭者 總員의 증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아 내었으며, 이는 새로운 기계가 성년노동에 대신하여 더욱 더 많은 일을 어린이에게 부담시키는 경향을 가진 때문이다.⁽⁴⁶⁾

요약하여, 1830년대 이전에 年少勞動이 이미 감소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몇몇 樂觀論者들의 변명과는 달리 수많은 자료들이 한결같이 이들 年少勞動者에 대한 대규모의 지속적이고 혹독한 착취를 말하여 주고 있어 “영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로 지칭될 정도이다.⁽⁴⁷⁾

IV. 工場立法

工場制 勞動組織은 긴 작업시간, 연소노동,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등 비교적 전통적인 양상뿐 아니라 監督과 規律, 都市生活의 혼합, 단조로움, 그리고 공장주의 노동자의 ‘階級的’ 分化 등의 새로운 긴장을 내포하고 있어 대중으로부터 또 議會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최초의 工場規制法인 로버트 피일 경의 「徒弟의 健康과 道德에 관한 法」(1802)은 醫學과 人道主義 정신의 영향하에 제정된 것으로, 구빈법 당국에 의해 농촌 공장주에 넘겨진 소위 救貧院 徒弟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식사시간을 제외한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저녁 9시 이후의 야간작업을 금지하였다.⁽⁴⁸⁾

蒸氣機關의 사용이 늘어나자 綿織工場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인근 어린이들을 자유로이 고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815년부터 로버트 오웬이 부가적인 法制化를 제안, 로버트

(45) D.T. Jenkins, “The Validity of the Factory Returns 1833~1850,” *Textile History* (1974), pp. 27-28.

(46) *Parliamentary Papers*, Factory Inquiry Commission, *First Report* (1833) XX, p. 55.

(47) Thompso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p. 349.

(48) 이하의 工場立法의 略史는 Frazer, *The Evolution of the British Welfare State*, ch. 3을 주로 참조하였음.

피일이 다시 이를 추진하였는데, 10세에서 18세까지의 어린이의 노동시간을 10시간 반으로 제한하고 한 시간 반의 식사시간과 30분의 교육을 제공한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1816년 下院 聽聞會와 1818년 및 1819년 토리黨의 福音主義者 케년 경이 이끄는 두차례의 上院 聽聞會를 거쳐 통과된 「綿織工場 規制法」(Peel's Act)은 단지 9세에서 16세까지의 一日 勞動時間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한 시간반의 식사시간을 규정하는 데 그쳤다. 또한 1819년의 법은 거의 유명무실하였으며 실제로 이 법이 유효한 동안 오직 두 건의 犯則만이 기록되었을 뿐이다.⁽⁴⁹⁾

이에 맨체스터의 상인 나다니엘 골드의 후원을 받은 북부의 聖公會 司祭·醫師·商人·勞動者들 집단이 대대적인 煽動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요구는 위협시되어 공개적 證言을 한 노동자들은 解雇되거나 要注意人物名簿에 올랐다. 급진적인 휘그당 의원 홉하우스는 1825년에 연소자 11시간 노동안을 제출하였으나, 야간작업을 금지하는 등 1819년의 공장법을 再強調하는 데 머물렀다. 1830년대 초가 되면 이와 같이 법제상으로는 면직공장 근로어린이들의 勞動時間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들 법률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또한 면직공장 이외의 공장에는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각종 論難 및 社會運動이 계속되었다. 지도층이 주로 토리黨으로 구성되고 종교적으로는 聖公會의 색채가 강한 '工場運動'은 비참한 年少 工場勞動者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쉼기였으나, 동시에 노동시간의 일반적인 감소를 염원하였고, 이 공장운동의 궁극적 승리는 정부의 自由放任의 태도에 일격을 가한 것이었다.

새들러의 법안이 상정되고 工場規制法 特別委員會 報告書가 간행된 것은 이러한 계제에서였다. 그러나 정치적 풍토가 거의 반 세기간의 토리黨의 지배에서 휘그黨 쪽으로 극적으로 바뀌고 새들러가 선거에 패배하게 되자 이 法案은 폐기되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당시의 思想的 政治的 風土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 18세기를 자유경쟁에 입각한 資源配分の 效率性を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학'(new political economy)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기존의 지배적 사상은 土地財産에 기본을 둔 상층 귀족의 溫情主義的 保護 後援 및 規制에 의해 사회가 움직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자본주의의 정착과 함께 市場競爭의 원리가 '道德經濟'의 理想을 대체해 가는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휘그黨은 부르조아들의 自由主義를 옹호했던 반면 토리黨은 地主貴族의 이해를 대변하였고, 토리黨의 일파(high Tory)는 정부의 溫情主義的 介入으로써 자유경쟁의 病弊를 치유하여야 한다고

(49) Maurice W. Thomas, *The Early Factory Legislation* (London, 1970), p. 27.

주장하게 되었다.⁽⁵⁰⁾

지주계급에 대한 부르조아 및 하층민의 40여년간에 걸친 議會改革運動의 성과로 이루어진 1832년의 選舉法改定은 결과적으로 빈곤층을 제외한 부분적 參政權 擴大에 그쳐 부르조아계급의 승리를 의미한 것이었으며, 특히 리이즈 선거에서 토리黨 溫情主義의 旗手인 세들러가 낙선한 일은 工場立法에 일대 전환기를 가져왔다.

세들러 法案에 대신하여 다음해 工場調査委員會 報告書에 입각한, 휘그당 지도자 엘토프 卿(Lord Althorp)의 穩健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1833년의 공장법은 工場運動과 부르조아 政治思想의 妥協案이었으며 자유방입적 理想이 이제 지배적으로 되었으면서도 勞動市場에서 自由契約原理의 例外規定을 마련한 것이 흥미롭다고 할 것이다.⁽⁵¹⁾ 또한 이것은 사실상 효력을 가진 최초의 工場法이었으며 水力 혹은 蒸氣機關을 동력으로 하는, 絹織을 제외한 모든 직물공장에서 9세 미만의 어린이의 고용을 금하였다. 또한 9세에서 12세에 이르는 공장어린이의 노동시간을 하루 9시간 일주 48시간으로, 13~18세의 未成年勞動을 하루 12시간 일주 72시간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들을 교육시킬 책임을 工場에 부과하였다. 그러나 견직공장에 대해서는 더 완화된 제한을 規定하였다. 새로 구성된 의회가 제정한 1833년의 工場法의 특징은 그 이전의 여러 工場規制法과는 달리 국왕이 4명의 工場檢閱官을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수시로 공장법 조항의 이행을 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1844년의 공장법은 소위 2부제라 하여 직물공장의 어린이로 하여금 하루의 절반은 6시간 반 이내의 노동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다니게끔 규정하였다. 동시에 고용 가능한 어린이의 최소연령을 8세로 낮추었으나 1874년에 10세로, 20세기에 오면 12세로 변화하게 된다.

이상이 공장의 年少勞動者 雇傭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표 6〉 참조). 工場法 특히 1833년 엘토프 卿의 工場規制法을 둘러싼 논의는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法定의 해석이요, 다른 하나는 어린이의 福祉增進에 어떠한 공헌을 했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이미 앞 절에서, 자유선택에 개입하는 것은 최악이라는 樂觀論을 살펴봄으로써 후자의 논란을 시사한 바가 있다. 공장법의 효과에 대한 傳統的인 解釋은 연

(50) 18세기의 道德經濟에 관해서는 E.P. Thompson, "The Moral Economy of the English Crowd in the Eighteenth Century," *Past and Present* (February 1971). 19세기 초 계급사회의 도래와 계급간 갈등을 사상적 대립의 측면에서 관찰한 것으로는 H.J. Perkin, *The Origins of Modern English Society, 1780~1880* (London, 1969)를 참조.

(51) 이런 의미에서 1833년의 공장법은 近代의 福祉國家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成人男子勞動者의 노동시간 단축도 이와 같은 아동노동시간 단축을 추구하는 工場運動, 미성년 및 여성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려는 10時間 勞動運動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美國의 경우에는 1916년에 와서야 아동노동규제법(Child Labor Act)이 제정되었으나 2년 후에 違憲判決의 운명을 맞게 된다(Hammer v. Dagenhart, 247 U.S. 251, 1918).

<表 6> 영국 노동관계 법령의 역사 요약

1782 法	救貧대상자의 산업노동을 촉진
1788 法	글썩소제 아동의 노동조건 개선
1796 Pitts案	구빈원아동을 위한 '산업학교' 개설
1802 徒弟의 건강과 도덕에 관한 법률 (Peel)	면직 및 모직공장의 구빈원도제의 노동조건 개선
1813 法	도제교육의 법적 필요성을 철폐
1819 면직공장규제법 (Peel)	최저연령을 9세로, 최대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
1825 Hobhouse案	1819法の 회피를 방지함
1831 Hobhouse案	綿공장 노동시간을 13시간으로 제한
1832 改革法	도제교육의 필요성을 비공업부문에서도 철폐
1833 아동노동규제법 (Althorp)	노동관계법률의 집행을 강화
1835 지방자치법	자유민의 배타적 권리를 철폐
1842 광산법	광산의 여성노동을 금지
1844 공장법	면공장의 아동노동을 하루 6시간 반으로 제한
1847 10시간 법안	여성 및 미성년노동을 10시간으로 제한
1850 法	10시간법의 회피를 방지
1853 法	1847年법에 아동에 관한 조항을 포함
1867 공장규제법 확대법	공장법을 모든 제조업에 확대 적용
1876 교육법	10세까지 의무교육 실시
1878 통합법	모든 기존 노동규제법을 단일 법으로 통합정리
1893 法	공장 및 작업장의 최소고용연령을 11세로 규제
1899 法	의무교육을 14세까지로 확장
1902 法	최소고용연령을 12세로 올림

자료 : Hutchins and Harrison, *A History of Factory Legislation* 및 Derek Frazer, *The Evolution of the British Welfare State*에서 작성.

소노동자의 상태가 1833년 法 통과 이후 급격히 好轉되었다는 것이다. 헌신적인 工場檢閱官과 社會改革者들의 부단한 노력이 없었다면 공장주들이 이윤을 크게 감소시키는 공장법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의 노력의 결과로 어린이들이 공업화의 最惡의 弊害로부터 보호되었다. 규제가 없었을 경우에 증가하였을 年少勞動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19세기 초반 工場調査委員會에 보고된 어린이들의 慘狀과 同세기 후반의 상태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알프레드 마샬이 관찰하기에도 “현재기 初 공장노동의 조건은 지나치게 건강에 해롭고 모든 工員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 억압적이었다. 그러나 工場法과 教育法은 공장으로부터 이러한 악습의 극단적인 변모를 제거하였고 많은 폐단은 家內手工業과 小規模作業場에서만 아직 잔존할 뿐이었다.”⁽⁵²⁾ 마샬의 의견은 공장법 연구자의 대부분이 받아들인 것으로, 예를 들면 그 중요성은 대표적인 영국 社會政策 教科書에도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엘트프 卿의 공장법은 社會政策史에 있어 명백한 전환점이었다. 이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착

(52) Alfred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 (London, 1920), p. 198.

취당하는 부류를 보호할 압도적 필요가 있을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식한 것이다. 근로어린이들의 복지를 보장할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나 고용자보다 국가 자체에 집중된다. 이러한 원리의 발달뿐 아니라 이의 執行力이 최초의 효율적인 법령에 의해 제공되었다.”⁽⁵³⁾

당대의 社會運動家들의 표현을 빌면 “1833년의 공장법은 至高의 善을 창출하였다. 이는 당시 필요불가결한 법제화를 방해하고 있던 社會惡의 많은 부분을 제거하였다.” 또한, “과도한 노동은 한때 공장제도에 특유한 종류의 질병을 초래하였으나 현재의 법령에 의하여 이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던 아이들도 工場法의 規制하에 배움의 길을 찾을 수 있다.”⁽⁵⁴⁾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논쟁이 없을 수 없다. 공장법의 비판자들은 家計가 빈한한 이상 공장법에 의해 어린이들이 단지 직업을 바꾸었으며, 새 일터는 더욱 비참하였다고 주장한다. 앤드류 유어는 工場調査委員인 蜷實을 인용하여, 부모들이 말하기를 자녀들이 11세나 12세가 될 때까지 직물공장에 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퍼스티안의 裁斷이나 못머리를 다는 일 등에 보내어 더욱 고되고 임금이 낮으며, 시력이 감퇴될 뿐 아니라 通風이 안되는 방에 앉은 채 계속 작업을 하여 전반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에 비하여 織物工場의 과업, 예를 들어 마루에서 폐기된 솜덩이를 치우는 일 등은 전혀 비위생적이지 않으며 공장법이 없다면 그들의 자녀들을 훨씬 먼저 공장에 보냈을 것이라고, 법규가 아이들을 더욱 힘든 작업에 몰아넣는다고 불평한다고 하였다.⁽⁵⁵⁾ 또한 헛트 같은 낙관론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산업체계의 발달이 물질적 번영의 일반적 상승을 가져오기 이전에는 이러한 규제는 다만 참상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여러 공장법들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어린이들의 고초를 추정하려는 세심한 시도가 과연 있었는가. 그들의 상태는 1833년에 임명된 初代 工場檢閱官들에 의해 묘사되었지만 그 이후 전반적인 호황기를 맞아 망각된 지 오래이다. … 공장법이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은 최근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제가 되었는데 생산력의 희생은 不問可知이다. 이러한 희생이야말로 사회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언정 그 경제적 손실은 무시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年少勞動의 경우 그 효과는 그들의 일의 손실을 떠나, 어린이들이 技術訓練機會를 잃고 결과적으로 청년노동의 습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폐단을 안고 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훨씬 민첩하게 기술을 배우며 어려서 취득한

(53) Derek Frazer, *The Evolution of the British Welfare State*, 1st ed. (1973), p. 21.

(54) Leonard Honer, *On the Employment of Children, in Factories and Other Works in the United Kingdom, and in Some Foreign Countries* (1840), pp. 1-7. Robert Baker, *The Factory Acts Made Easy: or, How to Work the Law without Risk of Penalties* (Leeds, 1854), pp. 3-4; 각각 Tames, *Document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p. 126 및 p. 182에서 재인용.

(55) *Parliamentary Papers, Factory Inquiry Commission, Supplementary Report* (1834), p. 226; Ure, *Philosophy of Manufacturers*, p. 361에서 재인용.

기술은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56)

교육에 관한 규정에 오면 그 성과는 별로 효과적이었던 것 같지 않다. 교육을 제공하기로 된 공장의 대부분에 자질있는 강사나 財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규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공장에 고용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려는 의도와는 달리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장법은 年少勞動者들이 한 주일의 특정일, 매일의 특정시간 동안 “學校라고 불리는 四面의 벽 내부에 수용될 것만을 규정하고, 고용자들이 매주 教師라고 지칭되는 사람의 검인을 받는 것만을 요구했을 따름이었다.” (57) 사실상 공장부설학교는 機關室의 貯炭場으로부터 最上級 乳兒院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짝이 없었다. 증기기관에 불을 지피거나 솜털을 꼬거나 마디를 풀면서, 또는 장부를 정리하거나 일을 감독하며, 심지어는 이들 직공의 부인, 이웃집 사람이거나 가게 주인들이 6~7명의 어린이를 마루와 그들의 무릎에 앉히고는 돌아가며 “아이들에게 그들의 작업장에서의 모험담을” 법에 규정된 두 시간 동안 들려주곤 하였다. (58)

이들 반박은 工場規制立法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불충분함에 화살을 돌리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出生申告가 의무화된 1837년 이전에는 어린이의 나이를 확인하기 힘들었다. 또한 공장주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린이를 실제로 고용하고 勞動規律 및 勞動時間에 책임을 갖는 이들이 노동자 자신이었던 경우도 많았다. 공장법의 효과가 미진하였다면 법규자체의 결함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지 立法精神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工場檢閱官의 한 사람인 호호너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듯이 입법의 원리를 수행하기 위한 방도가 불충분했을 뿐이었다.

1833년의 공장법은 어느 정도 무지한 상태에서 제정되었다. 이전의 工場規制法規에서 전혀 시도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장치를 채택하여, 실제 집행이 시작된 후에 상당부분이 잘못 고안된 것이라고 밝혀졌으며, 어떤 면은 오히려 목표달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부분의 결함은 법안의 최초작성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심사과정에서 不知不識간에 偏動한 자들의 소산이다. (59)

장기적으로 보아 몇 차례의 수정과 또한 작업장 및 교육에 관한 법령들에 의한 보완으로 어린이들은 공장의 울가미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앞 절에서 언급한 연소노동자의 경악할 만한 실태에 비추어 보아 공장법을 단지 그 효과의 미미함으로 매도하는 것은 퇴보적이고

(56) Hutt, "Factory System of the Early 19th Century," pp. 179-183.

(57) *Parliamentary Papers*, Factory Inspector's Report (1857), p. 17, Marx, *Capital*, Vol. I. p. 400에서 재인용.

(58) *Parliamentary Papers*, Reports on the Effects of the Educational Provisions of the Factories Act (1839), XLII, pp. 412-413.

(59) Horner, *On the Employment of Children*, pp. 1-7, 15-18.

패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이미 技術革新에 의해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연계가 약화되고 있던 시기에 1833년의 공장법은 공장 내에서 아이들이 부모 곁에 온종일 붙어 있을 가능성을 명확히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더욱 疎遠하게 하였다. 同法規는 “家族經濟로부터 정규교육의 분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던 것이다.”⁽⁶⁰⁾ 당시 영국이 근대적 義務教育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볼 때 공장법의 의미는 세삼 지대하다. 아마도 시드니 웹의 서술대로 工場立法은 公立國民學校나 警察制度보다 더 광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⁶¹⁾ 노동계층의 교육을 등한시한 데에는 여러가지 사회적 이유가 있겠지만 영국에서 국민학교 無償義務教育이 전반적으로 시행된 것은 19세기 말의 일이다. 실제로 공장법이 초등교육의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으나 法制로써 의무교육을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획기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⁶²⁾

1833년 工場法 制定過程의 해석은 그다지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가장 뚜렷하고 공통된 견해는 널리 알려진 사회적 병폐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대중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정부가 “특히 자비로운 대중의 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된”결과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즉 “오슬러, 새들러와 단기간 존속하였던 위원회 등이 대중적 압력을 강력하게 집중하여 의회가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⁶³⁾

이에 대하여 經濟學者 마벨은 修正主義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공장법은 대규모 綿織業者들이 群小工場의 생산비를 높여 산출을 감소하도록 고안한 장치라는 것이다. 그 결과 직물 가격을 높여 공장법의 영향을 덜 받는 資本設備의 수익성을 提高시키려는 의도로서, 수력에 의존하는 공장보다 증기기관을 사용하는 큰 공장들에 이롭게 규정되었다. 즉 수력으로 추진되는 기계일수록 상대적으로 고장을 잘 일으켜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공장법에서 이의 挽回를 위한 延長作業을 허용하는 정도가 불충분하여 이들 中小水力工場들은 일반적으로 법의 통과를 반대하였다.⁽⁶⁴⁾ 마벨은 공장법에 의한 都市의 大規模 蒸氣推進

(60) Smelser, *Social Changes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pp. 294-295.

(61) Sidney Webb, “Introductron,” to B.L. Hutchins and A. Harrison, *A History of Factory Legislation*, 3rd ed. (1966), p.viii.

(62) 이에 대하여 당시 이미 週日學校와 晝間學校를 포함한 초등교육의 발달이 상당하여 공장법의 역할이 極微하였고, 이후 1870년의 「一般義務教育法令」(Forster Act)도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E.G. West, *Education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1975), chs. 7-8.

(63) Oliver MacDonagh, “The Nineteenth Century Revolution in Government: A Reappraisal,” Peter Stansky ed., *The Victorian Revolution: Government and Society in Victoria's Britain* (1973), p.5; Derek Frazer, *The Evolution of the British Welfare State*, 1st ed., p. 20.

(64) Marvel, “Factory Regulation,” pp. 387-388.

工場의 이득을 추정하여 “가장 기술적으로 효율이 높고 경영이 잘된 공장이라면 1833년의 이윤이 5퍼센트 가량 증가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65)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해석은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 그가 대공장의 利潤上昇可能額을 과대평가했으리라는 근거가 적어도 세가지가 있는 것이다. 첫째 그의 계산은 年少勞動의 規制에 의해 수력공장의 생산비가 올랐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인데 증기력공장의 생산비는 불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生産費引上要因을 추정함에 있어 불규칙한 流水量에 따른 生産損失 전체를 相計하였으며 원료, 노동투입과 기계의 마모 등이 줄어들어 운영비가 절감되는 것을 감안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水力推進의 비중을 20퍼센트에 고정된 것으로 상정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줄어들고 증기력공장이 늘어나는 추세를 무시하였다.

또한 이윤의 5퍼센트 增加可能性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장 기술적으로 효율이 높고 경영이 잘된 공장”에서 일 뿐 전형적인 증기력공장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보통의 대규모 공장주들이 이와 같이 少額의 이윤증가 전망에 의존하여 工場法 制定을 위해 大衆煽動과 議會工作에 참여했을 까닭이 없다. 더우기 당시 영국 직물산업이 낮은 企業集中, 즉 다수의 작은 공장들로 구성된 構造로 특정지위졌음에 비추어 蒸氣力工場들이 공통적인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단체행동을 조직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과적으로 공장법은 資本投下所要를 증가시켜 小工場主의 쇠퇴와 자본의 집중을 가속화시킨 면은 있었으나 (66) 대자본가가 이윤증대를 위해 공장법 제정을 추진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영국 역사에서, 노동계층과 증산층이 각기 또는 힘을 합하여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던 1830년대와 40년대처럼 정치적 사회적으로 소란하고 긴장된 시대는 찾아보기 힘들다. 1829년에서 1832년까지 양 계층의 불만은 의회개혁을 위한 선동으로 결합하였는데, 大衆은 暴動과 示威를, 상공인들은 經濟的 排斥運動을 수단으로 삼았다. 1832년의 정치적 개혁으로 급진적 증산층의 요구가 일부 충족되자 노동운동만이 남아 홀로 분투하였다. 1837년의 恐慌 이후에는 中産層의 불만은 穀物法廢止運動으로 再生하였고 노동대중의 시위는 人民憲章을 위한 차아티스트 운동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번에는 兩者가 서로 독립적으로, 또한 상반되는 입장에서 움직였던 것이다. 이 시기의 긴장의 대부분은 절망상태의 노동계층과 상공업자의 離合集散에서 기인했던 것이며 그들의 움직임은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 차아

(65) 같은 글, p. 392. 여기서 實際利潤額의 크기는 문제되지 않는다. 글의 논의는 假想的인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66) Marx, *Capital*, Vol. I, p. 477. 그러나 Marx의 논의는 공장법의 적용이 1867년에 여타의 산업으로 擴散된 然後에 관한 것이다. 같은 책, pp. 470-480, 503 참조.

티즘의 붕괴와 함께 勞動階層의 政治運動은 19세기 말까지 잠잠해지고 組合主義에 입각한 단편적인 경제적 요구들이 이를 대신하였다. 勞動者階層의 意識과 歸屬感도 이와 軌를 같이 하여 浮沈하였던 것이다.⁽⁶⁷⁾

공장법의 제정도 이러한 배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는 참으로 대중적 요구의 반영으로서의 부르조아 정부의 타협이었으며, 大企業의 이윤추구의 도구로서 고안된 保守的 立法이 아니었던 것이다.⁽⁶⁸⁾

V. 맺 음 말

한 社會史學者의 말대로 산업혁명이 “인간의 生活手段에 대한 접근방법의 革命”이요, 인간이 “生態的 環境을 통제하는 데에서, 자연의 독재와 인색함으로부터 도피하는 능력에 있어서의 革命”⁽⁶⁹⁾이라면 이를 이룩하는 단계에 가장 크게 희생된 세대는 未成年工場勞動者들이었다. 영국 産業革命期の 근로어린이들은 공장제도 성립초기의 결정적 시점에서 短期的 勞動供給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장기적으로는 時間規律과 勞動倫理가 고취된 近代的 産業勞動者 形成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年少勞動者들은 대규모의 지속적이고도 혹독한 非人間的 搾取를 당하여 그 참상을 비길 데가 없었다. 이의 개선을 위한 대중적 요구의 반응으로 부르조아 정부의 타협에 의해 제정된 兒童勞動의 고용을 규제하는 工場法은 近代的 福祉國家에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7) Malcolm I. Thomis, *The Town Labourer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1974), ch. 10; John Rule, *The Labouring Classes in Early Industrial England, 1750~1850* (London, 1986); E.H. Hunt, *British Labour History* 등 참조.

(68) 李永石은 戶塚秀夫, 『イギリス工場法成立史論』(未來社, 1978)에 근거하여 “大資本이 中小資本과의 競争에서 優位를 確保하기 위하여 工場規制가 必要하였다. … 이러한 大工場主의 意圖가 잘 反映된 것이 바로 1833年 法이다”라 하였으나 이들은 Marx의 1867년 工場法에 대한 結果論的 논의를 잘못 해석한 듯이 보인다. 李永石, 「英國産業革命期の 工場立法에 관한 一考」, 『歷史學報』 97(1983. 3).

(69) H.J. Perkin, *The Origins of Modern English Society*, p. 3.